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에 따라 산출

1. 개정 이유

연근해장어통발어업에 사용되는 통발, 연근해자망어업에 사용되는 그물, 양식업에 사용되는 부표, 비어업인이 수산자원 포획·채취에 사용할 수 있는 통발에 대해 형태별로 어구보증금액과 미환급보증금 산출 계산식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어구보증금 부과 대상 부표의 범위 삭제(안 제85조의2)

- 어구보증금제도 부과 대상인 부표의 범위를 「수산업법 시행령」 제49조의2에서 규정하기 위해 시행규칙에서 삭제

나. 어구보증금액(안 별표16)

- 연근해장어통발어업에 사용되는 통발, 연근해자망어업에 사용되는 그물, 양식업에 사용되는 부표, 비어업인이 수산자원 포획·채취에 사용할 수 있는 통발에 대해 형태별로 어구보증금액 산출

다. 어구별 미환급보증금 산출 계산식(안 별표17)

- 연근해장어통발어업에 사용되는 통발, 연근해자망어업에 사용되는 그물, 양식업에 사용되는 부표, 비어업인이 수산자원 포획·채취에 사용할 수 있는 통발에 대해 형태별로 미환급보증금을 별도 계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의2를 삭제한다.

제85조의5제1항 중 “법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82조제3항”으로, “산출한 각 미환급보증금을 더한”을 “ 해당 연도에 산출한 각 미환급보증금에 전년도 미환급보증금의 누계를 합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계획 및 실적을”을 “사용실적 및 계획을”로, “사용계획 및 실적 보고서”를 “사용실적 및 계획 보고서”로 한다.

별표 16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7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73호의4서식의 제목 “미환급보증금의 사용계획 및 실적 보고서”를 “미환급보증금의 사용실적 및 계획 보고서”로 한다.

별지 제73호의4서식 중 “대표자 성명”을 “법인등록번호”로 하고, “전화번호”를 “성명”으로 하고, “법인등록번호”를 “전화번호”로 하며, 같은 서식 제1항 중 “미환급보증금”을 “미환급보증금에 전년도 누계 금액”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제85조의2(어구보증금 부과 대상 부표의 범위) 영 제49조의2제3호에서 “어장부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표”란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규격에 적합한 어장부표를 말한다.	<삭 제>
제85조의5(미환급보증금 산출 등) ① 법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환급보증금(이하 “미환급보증금”이라 한다)은 별표 17의 어구별 미환급보증금 산출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각 미환급보증금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제85조의5(미환급보증금 산출 등) ① 법 제82조제3항----- ----- ----- ----- 해당 연도에 산출한 각 미환급보증금에 전년도 미환급보증금의 누계를 합한 ----- ---.
②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미환급보증금의 사용계획 및 실적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3호의4서식의 미환급보증금 사용계획 및 실적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3월 31일	② ----- ----- --- 사용실적 및 계획을 ----- ----- 사용실적 및 계획 보고서----- -----

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 해야 한다.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부 칙	부 칙
<u><신 설></u>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16]

어구보증금(제85조의3 관련)

구분	형 태	금액기준
통발	1. 영 별표 2 제2호더목 부도 더-1, 같은 표 제3호다목 부도 다-1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4호나목에 따른 통발 중 스프링 등이 설치된 장구형의 통발과 다음 각 호의 통발을 포함한다. 1) 직경 40cm이하이면서, 높이가 12cm 이하인 소형 원통형 통발 2) 스프링이 설치된 원통형 통발	1,000원/개
	2. 영 별표 2 제2호더목 부도 더-1, 같은 표 제3호다목 부도 다-1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4호나목에 따른 통발 중 원통형의 통발(상기 제1호에 해당하는 원통형 통발은 제외함)	2,000원/개
	3. 영 별표 2 제2호더목 부도 더-1, 같은 표 제3호다목 부도 다-1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4호나목에 따른 통발 중 원뿔대형(반구형)의 통발	2,000원/개
	4. 영 별표 2 제2호더목 부도 더-1, 같은 표 제3호다목 부도 다-1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4호나목에 따른 통발 중 사각형의 통발	3,000원/개
	5. 영 별표 2 제2호더목 부도 더-1, 같은 표 제3호다목 부도 다-1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4호나목에 따른 통발 중 원뿔대형(대계류·붉은대계류)의 통발	3,000원/개
	6. 영 별표 2 제2호거목 부도 거-1 및 같은 표 제3호다목 부도 다-1에 따른 통발 중 장어통발	(통발) 300원/개 (갈때기) 3,000원/100개

자망	영 별표 2 제2호카목 부도 카-1 및 같은 표 제3호바목 부도 바-1에 따른 그물	2,000원/폭
부표	1.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양식업에 사용되는 부표 중 부피가 2L ~ 25L 미만	300원/개
	2.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양식업에 사용되는 부표 중 부피가 25L 이상 ~ 50L 미만	1,000원/개
	3.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양식업에 사용되는 부표 중 부피가 50L 이상 ~ 100L 미만	3,000원/개
	4.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양식업에 사용되는 부표 중 부피가 100L 이상 ~ 500L 미만	6,000원/개
	5.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양식업에 사용되는 부표 중 부피가 500L 이상	30,000원/개

■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17]

어구별 미환급보증금 산출 계산식(제85조의5제1항 관련)

구분	구분	금액기준
통발	1. 영 별표 2 제2호다목 부도 더-1, 같은 표 제3호다목 부도 다-1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4호나목에 따른 통발 중 스프링 등이 설치된 장구형의 통발과 다음 각 호의 통발을 포함한다. 1) 직경 40cm이하이면서, 높이가 12cm 이하인 소형 원통형 통발 2) 스프링이 설치된 원통형 통발	(해당 연도에 출고된 통발 개수 - 해당 연도에 반환된 통발 개수) × 1,000원/개
	2. 영 별표 2 제2호다목 부도 더-1, 같은 표 제3호다목 부도 다-1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4호나목에 따른 통발 중 원통형의 통발(상기 제1호에 해당하는 원통형 통발은 제외함)	(해당 연도에 출고된 통발 개수 - 해당 연도에 반환된 통발 개수) × 2,000원/개
	3. 영 별표 2 제2호다목 부도 더-1, 같은 표 제3호다목 부도 다-1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4호나목에 따른 통발 중 원뿔대형(반구형)의 통발	(해당 연도에 출고된 통발 개수 - 해당 연도에 반환된 통발 개수) × 2,000원/개
	4. 영 별표 2 제2호다목 부도 더-1, 같은 표 제3호다목 부도 다-1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4호나목에 따른 통발 중 사각형의 통발	(해당 연도에 출고된 통발 개수 - 해당 연도에 반환된 통발 개수) × 3,000원/개
	5. 영 별표 2 제2호다목 부도 더-1, 같은 표 제3호다목 부도 다-1 및 「수산자원관리법	(해당 연도에 출고된 통발 개수 - 해당 연도에 반환된 통발 개수) × 3,000원/개

	시행규칙」 별표 1 제4호나목에 따른 통발 중 원뿔대형(대게류·붉은대게류)의 통발	수) × 3,000원/개
	6. 영 별표 2 제2호거목 부도 거-1 및 같은 표 제3호다목 부도 다-1에 따른 통발 중 장어통발	(해당 연도에 출고된 장어통발 개수 - 해당 연도에 반환된 장 어통발 개수) × 300원/개 (해당 연도에 출고된 장어통발 갈대기 개수 - 해당 연도에 반 환된 장어통발 갈대기 개수) × 3,000원/100개
자망	영 별표 2 제2호카목 부도 카-1 및 같은 표 제3호바목 부도 바-1에 따른 그물	(해당 연도에 출고된 그물 폭수 - 해당 연도에 반환된 그물 폭수) × 2,000원/폭
부표	1.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1호 부터 제6호에 따른 양식업에 사용되는 부표 중 부피가 2L ~ 25L 미만	(해당 연도에 출고된 부표 개수 - 해당 연도에 반환된 부표 개수) × 300원/개
	2.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1호 부터 제6호에 따른 양식업에 사용되는 부표 중 부피가 25L 이상 ~ 50L 미만	(해당 연도에 출고된 부표 개수 - 해당 연도에 반환된 부표 개수) × 1,000원/개
	3.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1호 부터 제6호에 따른 양식업에 사용되는 부표 중 부피가 50L 이상 ~ 100L 미만	(해당 연도에 출고된 부표 개수 - 해당 연도에 반환된 부표 개수) × 3,000원/개
	4.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1호 부터 제6호에 따른 양식업에 사용되는 부표 중 부피가 100L 이상 ~ 500L 미만	(해당 연도에 출고된 부표 개수 - 해당 연도에 반환된 부표 개수) × 6,000원/개
	5.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1호	(해당 연도에 출고된 부표 개수

	부터 제6호에 따른 양식업에 사용되는 부표 중 부피가 500L 이상	- 해당 연도에 반환된 부표 개수) × 30,000원/개
--	--	------------------------------------

미환급보증금의 사용실적 및 계획 보고서

제출인	상호	법인등록번호
	성명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년도	① 미환급보증금(단위: 백만원)	② 사용 용도	지출액(단위: 백만원)
미환급			
보증금			
사용실적			

()년도	① 미환급보증금 예상액(단위: 백만원)	② 예상 사용 용도	지출 예상액(단위: 백만원)
미환급			
보증금			
사용계획			

「수산업법」 제8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5조의5제2항에 따라 미환급보증금의 사용계획 및 실적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전년도의 미환급보증금의 산출 명세에 관한 서류 2. 다음 각 목의 용도로 사용한 전년도의 비용 명세에 관한 서류 가. 어구등의 회수를 향상할 위한 홍보 나. 어구등의 보관, 회수거점 등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다. 어구등의 효율적 회수와 처리 방안의 연구·개발 라. 전년도에 받은 어구보증금보다 전년도에 어구보증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많은 경우 그에 대한 보전(補填) 마. 어구등의 회수에 드는 비용 바. 취급수수료 지급 사. 어구보증금과 취급수수료의 집행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 아. 어업인 등 지역주민 지원사업 자. 그 밖에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 3. 전년도 회계연도의 결산서(「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 의견서를 포함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작성요령

- ① 미환급어구보증금은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17에 따라 산출한 각 미환급보증금에 전년도 누계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
② 미환급보증금의 사용 용도는 첨부서류란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작성합니다.

처리절차

보고서 작성 제출인 (어구보증금관리센터)	→	접수 처 리 기 관 (해양수산부)	→	검토 (적정성 등 확인) 처 리 기 관 (해양수산부)	→	결재 처 리 기 관 (해양수산부)	→	적정여부 통보 처 리 기 관 (해양수산부)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